

1. 개정이유

한시조직인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의 존속기한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해당 조직 및 소속 정원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의 존속기한 연장 (별표8)

○ (기준) 2022년 5월 20일 → (개정) 2022년 8월 31일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2022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의 :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정원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2. 1. 0. ~ 1. 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중소벤처기업부령 제 호

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8 1. 규제자유특구기획단(존속기한: 2022년 5월 20일)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규제자유특구기획단(존속기한: 2022년 8월 31일)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 정원 대비표

■ 중소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[별표 8]

중소벤처기업부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(제19조제5항, 제19조의
2제2항 및 제19조의3제2항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1 규제자유특구기획단(존속기한: 2022년 8월 31일)	1. <u>규제자유특구기획단(존속기한: 2022년 5월 20일)</u>	1. <u>규제자유특구기획단(존속기한: 2022년 8월 31일)</u>	
	·	·	
	·	·	